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94
----------	-------

발의연월일 : 2018. 9. 13.

발 의 자 : 장제원 · 장석춘 · 염동열
정태옥 · 여상규 · 윤한홍
박성중 · 이은권 · 곽상도
심재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지방법원판사는 그 발부여부만을 결정하고 있으며 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검찰은 구속을 범죄수사의 수단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표로 인식하여 구속위주의 수사관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고 검찰과 피의자 간의 정보불균형 등으로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어렵게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석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의 제목 “(拘束)”을 “(구속 및 조건부 석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는 구속영장의 청구와 함께 제4항제2호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201조의2에 따른 심문을 거쳐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2.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또는 기한을 정함이 없이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

⑤ 지방법원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

⑥ 검사는 제4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01條(拘束) ①·② (생략)</p> <p>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 法院判事는 신속히 拘束令狀의 발부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p> <p>④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 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다. 이를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p>	<p>第201條(구속 및 조건부 석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檢사는 구속영장의 청구와 함께 제4항제2호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 법원판사는 제201조의2에 따른 심문을 거쳐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p> <p>1.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p> <p>2.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p>

<신 설>

로 또는 기한을 정함이 없이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
는 결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속영
장을 발부하는 결정

⑤ 지방법원판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
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
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
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
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신 설>

⑤ (생 략)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

⑥ 검사는 제4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